

TaxFlash



신규 Tax Holiday 규정

재무부는 2018년 4월 4일자로 재무부 규정 No.35/PMK.010/2018 (PMK-35)을 통하여 신규 Tax Holiday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기존의 재무부 규정 No.159/PMK.010/2015 및 개정규정인 No.103/PMK.010/2016을 폐지합니다.

어떤 기업이 적용이 가능한지?

하기의 요건을 만족하는 신규투자의 경우 Tax Holiday 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하기 업종에 해당하는 선도산업:
 - a. 업스트림 기초 금속산업으로써 통합된 것;
 - b. 석유 및 가스 정제 및 정련 산업으로써 통합된 것;
 - c. 석유, 가스 및 석탄에 기반한 석유화학산업으로써 통합된 것;
 - d. 무기(inorganic) 기초 화학 산업으로써 통합된 것;
 - e. 농업, 플랜테이션, 산림 작물에 기반한 유기(organic) 기초 화학산업으로써 통합된 것;
 - f. 제약 원재료 산업으로써 통합된 것;
 - g. 반도체 및 컴퓨터의 주요 부품 산업으로써 컴퓨터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 h. 통신 장비의 주요 부품산업으로써 스마트폰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 i. 보건장비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방사선, 전기치료, 또는 전기요법 장비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 j. 전기모터, 내연모터 등 산업기계의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기계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 k. 피스톤,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등과 같은 기계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4륜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차량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 l. 로봇틱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생산기계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 m. 선박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선박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 n. 항공기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항공기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 o. 엔진, 트랜스미션 등과 같은 기차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기차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 p. 전력 발전소 기계산업;
- q. 경제 인프라스트럭처.

현행 Tax Holiday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Kerjasama Pemerintah dengan Badan Usaha/KPBU*)의 일환으로 경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신청자가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선도산업도 추가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선도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종은 BKPM에서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신규 투자 계획 금액의 개정

Tax Holiday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신규 투자금액은 IDR 500 billion으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PMK-35는 신규 투자금액이 납세의무자(즉, 회사)를 통한 투자형태인지 또는 투자이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형태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부채-자본 비율

납세의무자는 재무부 규정 No.169/PMK.010/2015에 따라서 DER(Debt to Equity Ratio)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4. 납세의무자는 과거에 tax Holiday 신청이 재무부로부터 승인되거나 기각되지 아니하였어야 합니다.
- 5. 납세의무자는 인도네시아 법인이어야 합니다(설립일에 대한 제한 규정이 삭제됨).

기타 요구조건:

- Tax Clearance – Tax Holiday 신청자의 내국 주주의 경우 반드시 DGT로부터 Tax Clearance Letter를 받아야 합니다.

조세혜택 (Tax Facility)

신규 개정된 Tax holiday의 조세혜택과 구 규정에 따른 조세혜택을 비교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구 규정 | 신 규정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CIT) 감면율 | 10% – 100% | 100% (단일 감면율) | | | | | | | | | | | | | | | | | | |
| 혜택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 15년; 또는 • MoF와 협의에 따라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 투자 규모에 따라 5년 - 20년까지 혜택기간이 구분됨: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No.</th> <th>투자금액(IDR)</th> <th>기간(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500 billion up to < 1 T</td> <td>5</td> </tr> <tr> <td>2</td> <td>1 T up to < 5 T</td> <td>7</td> </tr> <tr> <td>3</td> <td>5 T up to < 15 T</td> <td>10</td> </tr> <tr> <td>4</td> <td>15 T up to < 30 T</td> <td>15</td> </tr> <tr> <td>5</td> <td>≥ 30 T</td> <td>20</td> </tr> </tbody> </table> | No. | 투자금액(IDR) | 기간(년) | 1 | 500 billion up to < 1 T | 5 | 2 | 1 T up to < 5 T | 7 | 3 | 5 T up to < 15 T | 10 | 4 | 15 T up to < 30 T | 15 | 5 | ≥ 30 T | 20 |
| No. | 투자금액(IDR) | 기간(년) | | | | | | | | | | | | | | | | | | |
| 1 | 500 billion up to < 1 T | 5 | | | | | | | | | | | | | | | | | | |
| 2 | 1 T up to < 5 T | 7 | | | | | | | | | | | | | | | | | | |
| 3 | 5 T up to < 15 T | 10 | | | | | | | | | | | | | | | | | | |
| 4 | 15 T up to < 30 T | 15 | | | | | | | | | | | | | | | | | | |
| 5 | ≥ 30 T | 20 | | | | | | | | | | | | | | | | | | |
| 혜택종료 이후 | 없음 | 혜택종료 이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 | | | | | | | | | | | | | | | | | | |

신청 절차의 개정

Tax Holiday 신청은 반드시 상업생산 이전에 BKP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규 투자 신청시 Tax Holiday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신규 투자 승인 이후 1년 이내에 Tax Holiday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Tax Holiday 신청서는 재무부 승인절차 이전에 반드시 BKPM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재무부는 BKPM으로부터 완전한 Tax Holiday 신청서(제안서)를 받은 이후에 5영업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승인 이후 조항

Tax Holiday 승인 이후에 방문조사시 실제 투자금액이 최초 투자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혜택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승인은 하기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a. 상업생산 시점시 투자계획의 실행금액이 IDR 500 billion 이하인 경우;
- b. 방문조사 결과 최초 주요 사업 활동 계획과 실행내용이 차이가 있는 경우;
- c. 중고 자본재의 수입 또는 구매. 다만, 동 구매가 타 국가로부터 신규 투자 패키지에 해당하는 재배치이며,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임. 또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구매인 경우도 예외가 적용됨;
- d. 최초 주요 사업 활동 계획과 관련되지 아니한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e. 조세 혜택 기간 중 자산의 이전 또는 소유권(지분율)에 변화가 있는 경우. 다만, 신규 자산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투자 금액을 낮추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임.
- f. 투자를 타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상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받은 Tax Holiday의 혜택은 패널티를 포함하여 반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투자계획의 실현이 IDR 500 billion를 하회하여 Tax Holiday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동 납세의무자가 최초의 주요 사업 활동계획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Tax Allowance의 적용을 제안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과규정

PMK-35는 하기의 경과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재무부 규정에 따라서 tax facility를 승인 받은 경우에는 tax facility 만료기간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재무부 규정에 따라 BKPM에서 작성된 제안서가 2015년 8월 16일 이후에 재무부에 제출되었으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규 규정인 PMK-35에 따라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신청기한

BKPM은 tax facility 제안서를 동 PMK-35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재무부에 제출합니다. 즉,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3일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이미 Tax Allowance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Tax Holiday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납세의무자 이미 Tax Holiday 혜택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Tax Holiday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Tax Allowan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orean Business Desk Contact

정태훈 회계사 (taehun.jung@id.pwc.com)

박승찬 회계사 (park.seungchan@id.pwc.com)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id.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id.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id.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id.pwc.com

Ali Widodo

ali.widodo@id.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id.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id.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id.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id.pwc.com

Dany Karim

dany.karim@id.pwc.com

Deny Unardi

deny.unardi@id.pwc.com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id.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id.pwc.com

Hanna Nggelan

hanna.nggelan@id.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id.pwc.com

Hendra Lie

hendra.lie@id.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id.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id.pwc.com

Laksmi Djuwita

laksmi.djuwita@id.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id.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id.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id.pwc.com

Mohamad Hendriana

mohamad.hendriana@id.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id.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id.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id.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id.pwc.com

Runi Tusita

runi.tusita@id.pwc.com

Ryosuke R Seto

ryosuke.r.seto@id.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id.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id.pwc.com

Sujadi Lee

sujadi.lee@id.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id.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id.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id.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id.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id.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 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contact.us@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8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